

## 칠레, 소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칠레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소의 이력추적시스템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소의 위생 추적시스템 공식 프로그램 책정’, 농목청(農牧廳, SAG)의 결의 제3321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11개 주에서 소 관련 축산시설의 등록을 먼저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주에서도 2005년 1월 1일부터 시설 등록을 하고 있다.

### 1. 소 관련 축산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등록 실시

소 관련 축산시설 중에서, ①공적 관리를 하는 가축시설(PABCO), ②산악목축을 하는 소 사육시설, ③국경지역에 위치한 사육시설, ④질병관리 박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 중 본 등록제도에서 지정하는 사육시설, ⑤가축시장과 도축장 등은 등록개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머지 시설은 등록개시부터 4년 이내에 SAG에 등록하여야 한다.

SAG는 등록시설에 대해 축산시설 등록부(RUB)에 기재하기위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이 번호는 시설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9자리 수이다. 생산자는 매년 7월, 6월30일 시점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사육두수를 보고 하여야 한다.

## 2. 개체식별을 위한 등록도 일부에서 실시

개체식별은 ‘개체식별공식장치(DIIO)’라고 불리는 것을 장착하도록 하는데, 축산시설 등록부(RUP)에 등록한 시설에서 사육되는 소는 장착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①에서는 대상 시설만 장착하고, ⑤는 장착 의무가 없으며, ⑥에서 언급한 나머지 시설의 소는 임의이다.

DIIO는 SAG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SAG로부터 부여받은 개체식별을 위한 9자리 번호를 인쇄하여 제조한다. DIIO는 황색으로 정해져 있으며, 왼쪽 귀에 이표 형태를, 오른쪽 귀에 단추 형태(오른쪽 귀에는 미세한 무선 IC장치도 이용 가능)를 생후 20일 이내에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방적인 대규모 목장의 경우에는 출하이전에 장착하는 것을 전제로, 이유기 또는 6개월령 이내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입 소의 경우에는 SAG에 개체등록과 함께 검역기간 종료 후 바로 DIIO를 장착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않고 농장 등으로 운반할 수 없다. 더욱이 생산자는 DIIO를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체등록 업무 자체는 SAG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 3자가 DIIO 번호, 품종, 성별, 생년월일 등을 소 개체식별 양식에 기입해서 제출한다. 또한 가축의 이동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SAG가 관리하는 ‘가축정보공식시스템’에 집약된다.

SAG는 개체식별을 도입함에 있어서 그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국의 소 관련 축산시설을 등록하고, 이동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질병발생의 초기단계에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해외로부터 질병이 침입한 경우에도 조기에 검출해서 박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SAG는 양돈, 양계, 양, 양봉 등 각 분야에 대해서도 공적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으며, 2004년 12월에는 양봉에 대해 SAG결의 4783호(2004. 12. 2) ‘수출용 벌꿀생산자의 등록제도(RAMEX) 가입 및 유지에 관한 절차’를 공표 하였다.

자료 : <http://www.maff.go.jp>에서

(황명철 [hwangmc@nonghyup.com](mailto:hwangmc@nonghyup.com) 02-3299-4170 농협조사연구소)